

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안내

KOREA OCCUPATIONAL SAFETY & HEALTH AGENCY



제도 개요

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



관련 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(안전보건 현황 공시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(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2(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)

※ 시행일 : '26.8.1. | 최초 공시 : '26년 안전보건 현황을 '27.4.30.까지 공시



공시 대상

① 건설업 외 사업주 : 상시근로자 수* 500명 이상

*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인 단위로 국내 사업장을 합산하여 산정

② 건설업 사업주 : 연간 건설공사** 금액 1,200억원 이상

** 연간 건설공사금액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1호의 「건설공사」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사업법」, 「소방시설공사사업법」,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사 실적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

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

※ 적용 제외 : 가.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. 국제 및 외국기관



공시 내용

- ① 안전보건관리체제
-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
-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
- ④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
- ⑤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

※ 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 기준은 향후 작성 가이드 확정 시 안내



공시 절차



공시 단위

공시는 사업체(법인) 단위로 이루어지며, 장소적으로 분리·운영되더라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

-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, 국내 소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합산하여 공시



공시 시기 및 방법

- **공시 시기** : 전년도 안전보건 현황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
- **공시 방법** : 지정 홈페이지에 공시 항목 직접 입력 제출 (산업안전포털 내 공시시스템 구축 예정)



과태료

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

- 과태료 1,000만원(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름)



공시 제도 문의

- **소속** :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
- **담당자 내선번호** : 052-703-0598, 052-703-0593

* 자세한 제도 안내 사항은 아래 산업안전포털 경로로 접속하여 확인하세요.

[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-> 사업신청·조회 -> 기타사업 조회 -> 안전보건현황 공시]